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29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김현정 · 강준현 · 김문수
김용만 · 김 윤 · 박정현
박홍배 · 이정문 · 진성준
차지호 · 최혁진 · 황명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의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공시 규정으로 투자자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임원 전과 이력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0조제1항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의2. (생략) <u><신설></u> 4. · 5. (생략) ③ ~ ⑦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반기 · 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제160조(반기 · 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 ----- -----

